

제42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1. 일 자 : 1995(4288)년 10월 5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참석인원 : 15명

朴贊圭, 李小圭, 金南鎭, 金昌賢, 鄭應杓, 金子洪, 李在洪, 金八用,
李文吉, 明南喆, 孫白洙, 金三星, 金京炫, 吳世一, 金永完

불참의원 : 8명

李福柱, 鄭應杓, 明南喆, 林一男, 文宅鎬, 金吉煥, 陳福春, 金慶禧

참석한 공무원

市長 및 各 課長

4. 개의선언 : 오전 10시 35분

5. 보고사항

1. 제 41회 회의록 낭독

◇書記 박찬대

-낭독 통과

※오전 10시 42분 李福柱 의원 참석

2. 각 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1954(4287)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
하여 각 위원으로부터 무수정 통과에 합의를 보았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음

3. 지방세법중 면허세세율 개정안에 대한 건의 건

※ 오전 10시 45분 金慶禧의원 참석

◇書記 박찬대

-위 건의문 낭독이 있었음

4. 중동시장 상인으로부터 진정서 낭독

◇書記

-낭독

※ 본 건 행정부로 이송할 것을 가결

◇李在洪 의원

-현재 실시중인 치도에 있어 시 일반적으로 차이가 막심할뿐더러 1세대당 5,000환 내지 6,000환의 민시민 부담이 되니 이것은 과반 시의회의 통과를 본 부역 및 현품 부과 조례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가?

또 말단 행정의 수족으로서 중책을 완수하고 있는 반장에게 모 장관의 거충 위협 사실에 대하여 시 당국으로서는 어떻게끔 생각하고 있는가?

시장의 답변을 요청한다.

◇市長 河東賢

-조례에 위반 없도록 할 것이며, 과도부담 관계는 실지 조사하와 일부를 시에서 부담토록 하겠다.

반장 위협 사건에 대하여는 본인 신분에 대하여 상사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있는 대장의 말이 있어 그간 보류하고 있다.

※ 본 치도에 대하여 과도부담, 도로포장 지대의 2중노동 등등에 비추어 시 당국에서는 당초계획에 모순이 있을뿐만 아니라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니 시에서는 보조(1부)에 있어서 어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에 있어 각 의원과 집행부간에 질의 응답이 있었음

◇鄭應杓 의원

-죽교4구동민은 남교동 치도를 담당 부역을 하고 있는데 차에 대한 취소 지명(知命)을 하겠는가?

◇建設課長

-그런 일을 하겠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서에서는 파출소 단위로 하였는지 모르겠다.

◇金昌賢 의원

- 당시 시 금고 이도(移途) 문제를 위요하여 신문에 불미한 사실의 보도가 있으니 그 취지를 알아야 되겠으므로 비밀회의에 들어갈 것을 긴급 동의 (재청---7청)

◇李文吉 의원

-본 건에 있어 상업은행으로 지적 이관 건의를 하게 된 경위 보고가 있자 보고도중 「참석하여 성립만 시켜 놓고 나갔다.」는 어미(語尾)에 대하여 내용 설명이 있었음

◇金南鎭 의원

-본 건李文吉의원의 설명내용에 행정부에서 생각지도 안한 일을 시의회에서 간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李文吉의원은 존속 시키는데 날인한 사실에 존속도 운동(간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가동착격이며, 취소하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李福柱 의원

-과거의 상업은행에서 목포시를 위하여 협조하였던 실적은 삼학도 공사 추진 의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무슨 이유로 물자 승인을 지연 시키고 있는가? 의원간의 알력면 야기 시키니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金永完 의원

-시 금고로서의 조흥은행의 불친절, 무성의에 대한 내용이 발언이 있었음

◇李小圭 의원

-과반의 불미사는 사과와 말씀을 들이는 바이다.

변명은 않겠다.

다만 시의원이라는 위신을 손상시킨 행동은 추호도 생각지 안했던바로서 시민으로 하여금 이해 관계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가의 의심을 사게 되어 사과만을 함과 동시에 현재 법적으로 입건되어 있으니 본인의 과오에 의하여 법적, 도의적 혹은 의회로서의 책임(제명처분)에 대하여 각오와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金昌賢의원 긴급 동의로서 비밀회의를 갖자는 것은 혹시 그러한 점은 없을 터이지만은 상호간의 분쟁을 조장시켜 이간적 내용을 포함한 발언 내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알아 보자는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나 공적일 것을 바란다.

◇金昌賢 의원

-위 발언에 대하여 곡해 없기를 바란다는 요지 발언이 있었음
표결 결과 재적 17명 중 가 6표 부결

◇吳世一 의원

-휴회할 것을 동의
표결 결과 전원 가결

◇휴회선언

-議長

(오후 1시 25분)

◇속개선언

-議長

(오후 2시 30분)

※ 오후 2시 35분 李福柱 의원 퇴석

6. 부의안건

1.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金京炫 의원

-본 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明南喆 의원

-방대한 예산 편성의 주간이 세출에 기준을 두어 세입 결함을 초래함은 유감지사다.

시립병원의 수입 격감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

◇李在洪 의원

-예산액의 1, 2할 징수세입은 앞으로의 예산불신의 원인이다.

오물 수수료 4할 수입은 세입결함으로 인한 사업 추진난에 봉착할 뿐 아니라 木浦市長 河東鉉이라는 고지서의 위신에 관하여 따라서 시민으로 하여금 납세에 대한 태만성으로 인한 휴지시를 불면할 것이다.

교부금의 미수입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상공계의 극소한 예산을 잉여 시킴은 상공도시 목포와 부합치 안하며 가일층 새 예산을 쓰더라도 상공계의 활약을 바란다.

양곡 비료가 정부 직영이 도로 된다는데 시 방침은 여하?

식량 특별회계 850,000환 잉여금은 만약 식량특별회계가 복구한다면 반려하기 바란다.

(본 건 복구 시키겠다는 산업과장 답변이 있었음)

동정세 결산에 있어 앞으로의 시 방침으로서 미납세액을 받겠는가? 혹은 말소시킬 것인가?

여비의잔액은 중앙과 왕왕 연락하여 목포에 이익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잔액을 둔 것은 환영치 않는다.

건설면에 있어 연도내에 착공도 안하고 예산잔액을 이월 시킴은 목포시 건설면으로 보아 적극성이 결여한 사실로서 본 의원은 앞으로 흑자를 안냈더라도 건설에 매진하기 바란다.

※ 위 질의에 대하여 각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

◇金三星 의원

-분여세 보조에 있어 앞으로 우려될 바 있는데 차에 대한 견해 여하?

◇財務課長

-각 시군으로 분여함이 원칙이다.

◇明南喆 의원

-식량 특별회계에 있어 죽동사무소 앞 가옥대 15,000환은 기히 매도된 것이며, 본 결산서로 보면 매도 안된 형식인데 견해 여하?

◇産業課長

-본 질의에 대하여 내용 설명이 있었음

◇金永完 의원

-장부와 결산서 내용과 상위된 점이 있으니 충분 검토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실이 없도록 바란다.

※ 李小圭, 李在洪, 金慶禧, 鄭應杓, 金南鎭 의원 이석

◇議長

-표결 결과 재석 11명 중 가 9표 통과

2. 1955(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1회)

◇金永完 의원

-항동시장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建設課長

-설계 착수가 약 1주일 요하니 25일 이내로 하겠다.

◇孫白洙 의원

-예산면에 2,000만환 초과 이유 여하?

◇市長

-시장 일부 구조 변경과 양철관계며 25일 이내 착공이라 함은 부지 세대
건물이 철거 되어야만 될 일이다.

◇金三星 의원

-본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적 11명 중 가 전원 가결

◇議長

-회의록 서명에 金南鎭, 陳福春 의원을 지명

◇폐회선언

-議長

(오후 4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10월 12일

議長:朴 贊 圭

議員:金 南 鎭

” :陳 福 春

作成者 書記:洪 南 植